

철도사업법

[시행 2025. 1. 21.] [법률 제20702호, 2025. 1. 21., 일부개정]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제2조(정의)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제3조의2(조약과의 관계)

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

제4조(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)

제4조의2(철도차량의 유형 분류)

제5조(면허 등)

제6조(면허의 기준)

제7조(결격사유)

제8조(운송 시작의 의무)

제9조(여객 운임 · 요금의 신고 등)

제9조(여객 운임 · 요금의 신고 등)

제9조의2(여객 운임 · 요금의 감면)

제10조(부가 운임의 징수)

제10조의2(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)

제11조(철도사업약관)

제12조(사업계획의 변경)

제13조(공동운수협정)

제14조(사업의 양도 · 양수 등)

제15조(사업의 휴업 · 폐업)

제16조(면허취소 등)

제17조(과징금처분)

제18조(철도차량 표시)

제19조(우편물 등의 운송)

제20조(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)

제21조(사업의 개선명령)

제22조(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)

제23조(명의 대여의 금지)

제24조(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)

제2장의2 민자철도 운영의 감독 · 관리 등

제25조(민자철도의 유지 ·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)

제25조의2(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)

제25조의3(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)

제25조의4(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)

제25조의5(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)

제25조의6(국회에 대한 보고 등)

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

제26조(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)

제27조(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)

제28조(우수 철도서비스 인증)